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1304호 2021. 8. 19(목)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180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.....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-182호[공공하수도 공사·유지 허가 고시] ..... 2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-1065호[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] ..... 3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</li> <li>☞ 북구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bukgu.ulsan.kr">www.bukgu.ulsan.kr</a>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</li> </ul>
--------	-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☎241-7122, 행정7122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180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8월 19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# 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송내2길 31	화봉동 437-10	2021. 8. 19.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(☎052-241-7283)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([www.bukgu.go.kr](http://www.bukgu.go.kr)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1. 8. 19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# 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-182호

## 공공하수도 공사·유지 허가 고시

「하수도법」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·유지 허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8. 19.

###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

#### 1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
- 명 칭 : SK에너지(주)
- 주 소 : 대구광역시 동구 대경로 31-27

#### 2. 사업목적

- 공공하수도(우수박스) 하부에 매설된 송유관로 부식 보수

#### 3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울산 북구 연암동 1140-3번지 일원

#### 4. 공사개요

- 우수박스 바닥 슬라브 절개 및 복구  
(1.5m\*1.3\*0.3(m) - 2개소)
- 박스 절개부 시멘트 액체 방수 3회

#### 5. 사업기간 : 착공일('21. 11.)로부터 1개월

#### 6.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

연번	소재지	지 번	지 목	면 적(m <sup>2</sup> )		소 유 자
				공부면적	굴착면적	
1	연암동	1331-12	도	632	1.95	국(건설부)
2	연암동	1140-3	도	14,231	1.95	국(건설부)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-1065호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하천구역(천곡천) 내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,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19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공고내용 :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1. 8. 19. ~ 2021. 9. 2. (14일간)
3. 공고장소 : 시군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
4. 무단점유 현황

재산의 표시		무단점유현황				비 고
소재지	번지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점유면적 (㎡)	
복구 호계동	943-22번지	미상	미상	불법경작	20	

#### 5. 공시송달내용

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한 행위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, **2021. 8. 27일까지**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, 기한 내 미이행 시 「하천법」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